탄 원 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대법원 상고심 무죄 요청

수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귀중
사건번호	2026도755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509)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탄원 취지	원심판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관한 법률 적용을 엄밀히 심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끝까지 법률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자유에 가해진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정질서의 침해 여부는 엄중히 가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건에 관여한 각 사람의 책임은 직책이나 여론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행위와 그때의 인식, 그리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일부 위증에 관한 유죄 판단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유죄 판단을 막연히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두 법원이 내린 중대한 판단이기에, 그 결론을 지탱하는 법리와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기준을 최종심에서 특히 정밀하게 살펴주십사 청합니다.

1. 선례가 인정한 부분적 가담의 책임과 '중요한 임무'의 한계를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87조 제2호는 내란을 모의·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것과, 특정인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분하는 일은 서로 양립합니다. 이 구분은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 유형과 해당 구성요건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집단의 구성원이 전체 폭동행위를 사전에 모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 중 일부에 기여하였다면 전체 내란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모의가 없었다거나 단전·단수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관련 죄책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선례를 회피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례를 적용할 때에도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체 폭동의 일부에 의식적으로 기여한 행위인지, 나아가 왜 단순 관여를 넘어 형법 제87조 제2호의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전체의 위법성과 행위자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호의 구체적 역할 판단을 생략하지 않았는지, 제3호와의 구별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의 내용과 위험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전체 폭동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는지, 피고인이 담당한 부분의 법적 중요성을 무엇으로 평가하였는지, 의식적인 기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각각 구분하여 논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미리 면하게 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법률이 서로 달리 정한 책임 유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을 피고인이 당시 무엇을 알고 받아들였는지와 연결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무력화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피고인이 그 계획 전체를 스스로 구상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인식도 가능하고,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 정황의 종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접적인 자백이나 사전 공모 문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1심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점, 법조인·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지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한 국회 상황의 인식,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 등을 결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러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정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평가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전체 행위에 자신이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평가는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지시 문건을 접했는지, 그 문건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이해했는지, 경찰청장과의 통화가 어떤 상황을 전달했는지, 언론사에 관한 협조 지시가 국회 봉쇄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여졌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단순히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모두 전제로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87조·제91조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소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논리의 법률적 기준이 명확한지를 심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특히 직책에서 비롯되는 규범적 의무와 실제 가담에 필요한 주관적 인식을 구별하였는지, 사후에 확인된 전체 실행 계획을 당시의 개인적 인식에 소급하여 귀속시키지 않았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3. 항소심의 유죄 유지 판단에 법리 적용상 누락이나 비약이 없는지 세밀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항소심은 제1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일부 위증에 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형량을 9년으로 높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방청을 통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국민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성과 공직의 책임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매우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판단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 폭동과의 법적 연결, 개인의 역할 수준, 내란에 대한 인식과 기여라는 요소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이 이 요소들을 실제로 따져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행위의 위험성 및 고위공직자의 책임만으로 중요임무종사의 요건을 갈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리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확인되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첫째, 전체 내란과 피고인의 개별 지시 사이의 기능적 연결은 무엇인가. 둘째, 왜 그 연결이 단순 관여의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임무 종사의 수준에 도달하는가.

셋째, 이러한 기여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어떤 인정사실과 법률 기준으로 도출했는가. 이 세 가지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9년이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탄원서의 취지도 형량이 무겁다는 감정적 항의가 아닙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4. 실제 단전·단수 미실행과 사전 모의 정황 부재를 정확한 법적 위치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제1심 설명자료와 항소심 판단 요약에는 계엄 이전 피고인의 모의·예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단전·단수 실행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제1심은 반복 지시나 이행 점검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가 피고인의 자발적 중단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판단까지 함께 살펴야 공정합니다.

따라서 미실행이라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 임무 수행 기간과 범위, 실제 통제한 조직과 조치, 독자적으로 기획했는지 여부는 법률상 '중요한 임무'의 성격과 가담 정도를 평가할 때 여전히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관한 사정을 곧바로 무죄 사유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양형자료로만 취급하여 구성요건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5. 직권남용 무죄 판단을 내란 혐의의 자동 무죄 근거로 삼지 않되, 공통된 사실기초는 대조해 주십시오.

법원은 피고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에게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소방기관에 협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후속의 구체적 준비태세가 실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구별한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가 무죄라는 이유로 다른 하나를 무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기관의 실제 행위, 연락 내용의 전달 방식, 별도 조치의 유무처럼 두 혐의가 공유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공통 증거에 관한 판단이 일관되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6. 위증 혐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구별해 주십시오.

항소심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사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의 목격에 관한 증언의 위증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부분에 관한 위증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각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 심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1도5252 및 95도2864 판결 등은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한 구절이 아니라 신문의 전체 맥락, 질문의 취지와 표현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위증죄의 핵심은 단순히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는지에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한 주요 사실을 고의로 부인했다면 위증은 엄중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가지 유죄 판단 대상별로 질문과 답변의 원문, 객관적 자료의 내용, 증언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 목격 위치와 당시의 상황, 기억 상실이나 착오 가능성을 배척한 이유가 모두 구분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미 증거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시 다투기보다, 원심이 그 진술의 의미와 주관적 허위성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빠짐없이 적용했는지를 심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7. 상고심의 절차와 결론에 맞는 구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 사건 기록 전체나 항소심 판결문 전문, 쌍방의 상고이유서 원문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된 재판부 설명자료와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 중 법률상 확인이 필요한 기준을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형법 제87조 제2호의 '중요한 임무'와 제3호의 단순 관여의 구별, 형법 제91조에 따른 국헌문란 목적과 개별 고의의 인정 방법, 이러한 기준을 실제 인정사실에 적용한 원심의 논리, 위증의 주관적 허위성에 관한 판단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면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거나 기록상 가능하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맺음말 — 판결의 무게만큼 개인의 형사책임도 엄격히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이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대되거나 생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헌정질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일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두 차례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탄원하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인정된 행위와 주관적 인식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끝까지 의심 없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은 어느 사건에서나 같습니다. 오직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여, 법률상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무죄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선택): _____ 생년월일: _____

대법원 전원합의체 귀중